긴급경영안정자금

◈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

가. 사업목적

재해 피해 기업,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
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나. 지원규모: 2,500억원

5-1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

- □ (대상)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'자연재난' 및 '사회재난'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 - *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)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등")이 발급한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제출
- ※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 우대 사항
- 융자계획 공고 Ⅲ.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①항(우량기업), ②항(휴·폐업기업), ③항 (세금체납기업), ⑩항(부채비율초과기업) 적용 예외 (단, ②항(휴·폐업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, ③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·매각의 유예에 한함
- □ (융자방식) 직접대출
- □ 대출조건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대출, 운전)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대출, 운전) 1.9%(고정)
기 타	•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